

파주시통·리·반선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아파트 신축으로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·리를 아파트 단지별로 분리하여 통·리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아파트 단지조성에 따라 현행 286통·리 1,510개 반을 4개통·리 74개 반을 증설하여 290통·리 1,584개 반으로 조정
 - 조리면 한라 및 동문아파트 신축에 따른 대원4리 및 대원5리로 2개 리를 증설하고
 - 금촌2동에 대영장미아파트(2차, 6차) 및 건일장미아파트 단지를 12통으로 하고 장안흰돌마을아파트 단지를 13통으로 각각 증설함.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별로 통·리를 분리 조정함으로써 통·리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조례로써 정하도록 명시되었는바, 법령적합성 및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지 방 자 치 법

제4조 (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) ⑤洞·리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·리를 2개이상의 洞·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洞·리를 하나의 洞·리로 운영하는 등 行政運營上 洞를·里(“行政洞·里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⑥第5項의 行政洞·리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.